

의안번호	2204901
의 퇴 인	김상훈 의원
회 답 일	2024.11.12.
추 계 번 호	24E443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농수산물·임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농업인을 위한 미가공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해 2029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, 재정수입은 2025년 529억원 등 2025~2029년 5년간 총 2,645억원(연평균 52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- 2025~2029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1,975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670억원 감소 예상

[표 1] 농업인을 위한 미가공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세수효과:
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전체 세수효과	-529	-529	-529	-529	-529	-2,645	-529
- 국세(74.7%)	-395	-395	-395	-395	-395	-1,975	-395
- 지방소비세(25.3%)	-134	-134	-134	-134	-134	-670	-134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 제1항제7호	○ 농·임·어업 종사자가 공급받는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신설	-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 제1항제7호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대상으로 하는 농·임·어업 종사자가 공급받는 운송용역 중, 현재 관련 통계가 입수가능한 미가공 농산물 운송용역으로 한정하여 추계함
 - 현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의 농수산물유통정보(KAMIS)에 따르면 수산물 및 임산물을 제외한 전 농산물 69개품목을 대상으로 물류비 조사¹⁾
 - － 식량작물(쌀, 보리, 콩, 옥수수, 감자, 고구마, 기타 등 12개), 청과류(배추, 무, 마늘, 양파, 수박, 참외, 배, 사과, 기타 등 35개), 축산물(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계란, 우유, 기타 등 7개), 기타(참깨, 땅콩, 화훼, 약용작물, 전매작물, 기타 등 15개)
 - 개정안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출하에 대한 운송용역을 상정하고 있으므로, 미가공 농산물로 추계대상을 한정
 - 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가공식품을 ① 농·임산물에 식품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가하였거나, ②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또는 현격한 성분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을 하였거나, ③ 섭취 시 세척, 가열조리 등의 과정 없이 바로 또는 양념만을 혼합하여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정의²⁾
- 세수효과는 ‘미가공 농산물 운송용역의 공급가액 × 세율 10%’로 추계
 - 최근의 미가공 농산물 운송용역 공급가액을 바탕으로 추계하되, 추계기간 동안 공급가액이 최근 평균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제
- 개정안의 부칙을 참고하여 세수효과가 2025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

1)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 농수산물유통정보(KAMIS) 누리집:

<https://www.kamis.or.kr/customer/circulation/distribution/cost.do>

2) 식품의약품안전처, 「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매뉴얼」, 2016.11.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(공급가액) 농업인을 위한 미가공 농산물 운송용역의 공급가액은 2019~2023년 연평균 5,293억원(농림축산식품부 제공자료) 수준

[표 2] 농업인을 위한 미가공 농산물 운송용역의 공급가액

(단위: 억원)

유종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
공급가액	5,527	5,132	5,060	5,396	5,349	5,293

주: 각 연도별 농산물 운송용역의 공급가액은 매년 농산물 운송비용에 농산물 출하단계의 유통비용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(농림축산식품부)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세수효과) 개정안에 따라 농업인을 위한 미가공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해 2029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, 재정수입은 2025년 529억원 등 2025~2029년 5년간 총 2,645억원(연평균 52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- 2025~2029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1,975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670억원 감소 예상

[표 3] 농업인을 위한 미가공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세수효과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전체 세수효과	-529	-529	-529	-529	-529	-2,645	-529
- 국세(74.7%)	-395	-395	-395	-395	-395	-1,975	-395
- 지방소비세(25.3%)	-134	-134	-134	-134	-134	-670	-134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성은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